

— 개인택시 자율부제에 관한 청원 —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경상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장 전 창 근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일경만 의원

### 3. 청원사유

- 개인택시사업의 문영난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부제 완화 조정
  -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수입금 감소
  - 물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부담 과중
  - 각종 교육, 훈련, 길·홍사등 운행 중단 사례 빈번
-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부제 완화
  - 생계유지비 마련을 위한 무리한 운행 우려

### 4. 청원내용

- 개인택시부제 운영 완화 조정

현행 6부제 = 자율 부제

## 5. 검토의견

- 택시 부제운영은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( 건설교통부 훈령 제88호, 1995. 7. 13 )에 의하여 택시의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휴식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건강유지는 물론 차량정비등을 통한 안전운행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임.
- 현재, 전국적으로 지역실정에 따라 6부제, 5부제, 4부제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개인택시의 자율부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개인택시를 자율부제에 개선할 경우, 청원사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증대를 위한 무리한 운행이 예상되어 이로인한 차량 정비 소홀과 운전자의 건강악화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며, 법인택시회사와의 관계에서도 형형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임.
- 따라서, 개인택시부제의 자율화는 전반적인 택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, 이 청원사항을 집행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부제완화여부 및 개선사항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# 관련 규정 조문

##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

제정 1994. 12.22 건설교통부훈령 제1032호

개정 1995. 7.13 건설교통부훈령 제 88호

제9조 (택서부제) ①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불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일시적인 고등수요의 증가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②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차하여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.

## 택시부제 실시 현황

### 〈도 내〉

| 구 분 |   |   | 개 인 택 시 | 벌 인 택 시 |
|-----|---|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|   |   | 부제      | 부제      |
| 구   | 미 | 시 | 6       | 8       |
| 프   | 함 | 시 | 6       | 8       |
| 김   | 천 | 시 | 4       | 8       |
| 경   | 주 | 시 | 6       | 8       |
| 안   | 동 | 시 | 6       | 8       |
| 경   | 산 | 시 | 6       | 10      |
| 영   | 천 | 시 | 5       | 5       |
| 영   | 주 | 시 | 6       | 8       |
| 문   | 결 | 시 | 6       | 10      |
| 칠   | 곡 | 군 | 6       | 4       |

### 〈타 시·도〉

| 구 분 |         | 개 인 택 시 | 벌 인 택 시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|         | 부제      | 부제      |
| 대   | 구 광 역 시 | 4       | 8       |
| 부   | 산 광 역 시 | 4       | 10      |
| 대   | 전 광 역 시 | 3       | 6       |
| 광   | 주 광 역 시 | 3       | 8       |
| 인   | 천 광 역 시 | 3       | 12      |
| 서   | 을 특 별 시 | 3       | —       |